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특별법 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일시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0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

목차

목차	2
프로그램	3
발제1	5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피해 사례	
발제2	13
국가정보원 사찰·불법공작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프로그램

- 10:00 사회
- 10:05 인사말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 내보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
- 10:10 좌장 박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 10:15 발제1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피해 사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10:45 발제2 국가정보원 사찰·불법공작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가안)
김남주 변호사, 내보라내파일시민행동
- 11:05 토론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공보간사
(가나다라 순)
- 12:00 종합토론
- 12:15 폐회

발제1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피해 사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현대의 민주주의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데 그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이를 헌법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에 대한 준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킨다는 선서를 한다. 이는 명백히 옳은 일이며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맹세를 스스로 저버렸다. 자신의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국가의 주권 그 자체인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진행한 것이다.

2018년 7월, 문건이 하나 공개되었다(그림1). 환경부의 요청에 대한 국정원의 회신이었다.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등 활동 내역’이라는 주요 내용을 담은 이 문건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정원의 활동이 나타나 있다.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 지역, 시민, 종교, 학계 등 분야별 16개 반대단체를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판여론 조성, 내부 갈등 유도, 후원금 모금 차단, 핵심인물의 신원자료 수집, 세무조사 압박 등을 자행하였다. 원인은 4대강 사업이었다. 국가 정책에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이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이 당사자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전신이자 실체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야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의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 운동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한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려 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은 타당성이 없고 환경만 망치게 될 이 사업에 크게 반발하였고, 그해 6월 일어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비판 여론이 조성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대신, 사실상 이름만 바뀐 4대강살리기사업, 일명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림1] 환경부 자료요청에 대한 국정원 회신 내용

환경부 자료 요청에 대한 국정원 회신내용

연번	주요 내용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등 활동 내역)
1	(2008.12월) 환경.지역.시민.종교.학계 등 분야별 16개 반대단체를 선정, △이념 편향성 공개를 통한 비판여론 조성 △보수 환경단체 지원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언론증재추제소 등 대응책 제언 청와대(국가위기상황팀장) 보고
2	(2009.1월) 반대단체끼리 연대 방해를 위해 △환경(보조금 유용 등 일탈사례 발굴, 기업 후원금 모금 차단) △종교(좌파.과거성향 부각, 국책사업 차질 사례 홍보) △언론(지역 찬성여론 홍보) 등 대응전략 제시 청와대(정무.민정.국정기획수석) 보고
3	(2009.1월) 4대강 사업 반대가 예상되는 3개 단체의 △한미 FTA 체결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 국정발목잡기 사례를 종합하고, 환경단체 핵심인물(24명)의 신원자료 및 개인비리를 수집 청와대(민정수석) 보고
4	(2009.7월) 반대단체(8개) 견제 방안으로 △불법활동 채증 강화 △세무조사 압박 등을 제시하는 한편, 찬성단체(3개) 강화 방안으로 △정부 유관기관과 상시 대화채널 구축 △홍보 활동비 지원 등을 제시 청와대(홍보기획관) 보고
5	(2009.7월) 사회.환경.종교단체 등 주요 반대인물 20명을 선정하고, 정부부처 친분인사를 '1:1 전담관'으로 지정, △투쟁계획 사전 파악 △내부 갈등 유도 등 간접관리라인을 구축하는 '전담관 매칭 방안' 수립 청와대(홍보기획관) 보고
6	(2010.3월) 20개 찬성단체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 △정부행사 시 핵심인사 초청.격려 △보수 언론을 통한 활동상 부각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제언 청와대(기획관리비서관) 보고
7	(2010.3월) 4대강 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 △친환경 생태복원 △수질 개선 △지역주민 혜택 △문화유산 창조 △국민의 삶 향상 △적법절차 준수 등 취지의 설득.홍보 논리 작성 청와대(정무.민정.국정기획수석) 보고
8	(2010.3월) 청와대 요청에 따라 종교계 각 종단별 반대 주도단체(8개) 현황 및 핵심인물(10명)의 주요 반대 활동을 파악, △종단 고위층에 대한 설득 확대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규탄집회 개최 △개인비리 언론보도 추진 등 대응방안 제시
9	(2010.6월) 학계 내 주요 반대 교수들의 동향을 수집, △복무규정 준수 여부 및 교원 평가실태 점검 △국고지원금, 연구용역비 감사 추진 △보수 언론을 통한 인기 영합적 일탈행위 보도 등 견제책 제언 청와대(대통령실장.민정.교문수석) 보고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2018.07.)

2007년부터 이어진 악연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벌였다. 2008년 9월 경 검찰 특수부는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부가 시민사회단체를 압수수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위 문건의 세무조사 압박 등의 활동 내용과 일치한다.

국정원은 후원금 모금 차단을 통해 환경단체의 활동을 방해했다. 국정원은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기업에 환경단체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환경재단의 경우 4대강 사업에 우호적인 연구 결과를 나오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회유하는 한편, 다른 기업들에게는 환경재단측에 자금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다양한 압박을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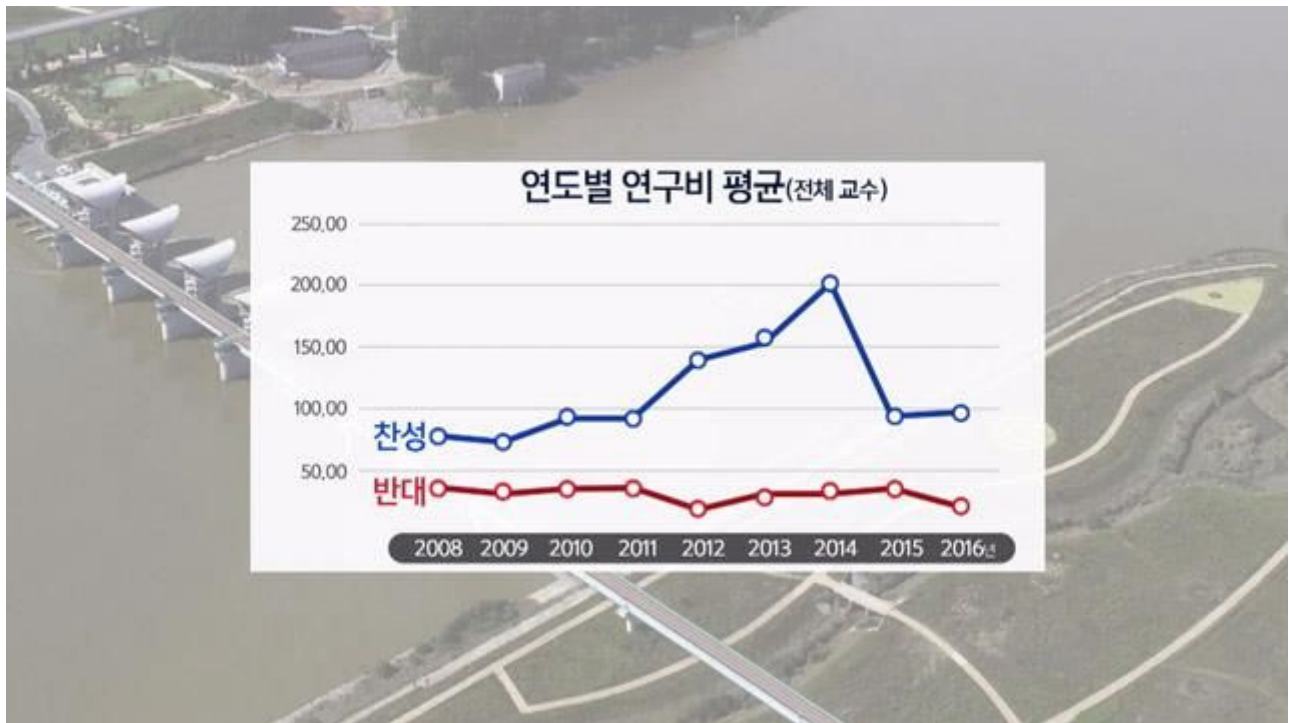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연구자, 교육자에게도 압력이 가해졌다. 4대강 사업을 활발히 반대했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에게 국정원 직원이 직접 접촉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용역 최종심사를 통과하고도 계약과정에서 발주처인 모 정부기관이 박창근 교수를 연구원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여 스스로 빠진 적 또한 있었다. 이는 비단 박창근 교수만의 사례는 아니었다. KBS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 찬성 교수가 반대 교수의 연구용역 수주 금액, 1인당 연구비 평균 금액을 비교한 결과 큰 폭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교수들에게 정부 연구 용역을 몰아줬다는 얘기이다(그림 2, 3).

[그림 2] 9년간 1인당 평균 연구 용역 수주 금액



출처 : KBS 뉴스(2018.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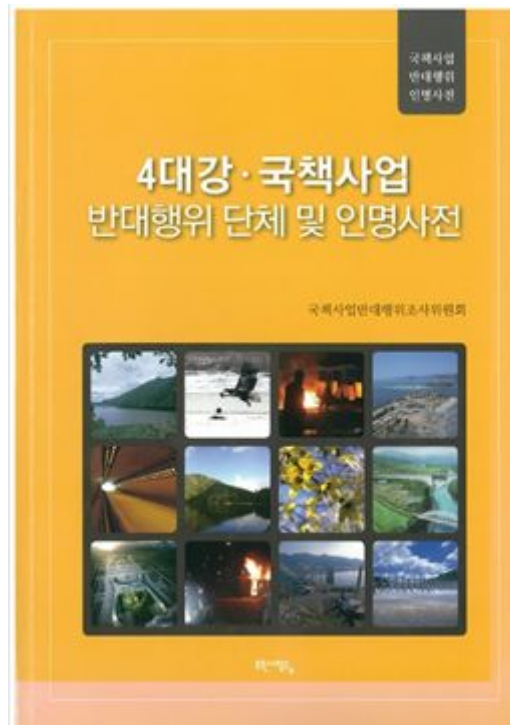
[그림 3] 2008~2016년 1인당 연구비 평균



출처 : KBS 뉴스((2018.07.10)

4대강 사업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던 환경단체의 활동가 또한 국정원의 관리대상이 되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의 실무자였던 이철재 활동가는 국정원 직원이 수시로 연락을 하여 관령 상황에 대해 질의해 왔다고 회고했다.

[그림 4] 보수단체에서 제작한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 표지



[그림 5]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에 기록된 명단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가 2012년 3월 16일 발표한 4대강 반대 주요행위자 명단

단체 : 12개 단체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민주당 4대강사업 저지 특별위원회,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법국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연대,
환경과공해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인사 : 50명

① 정치인 (※ 당시 직위): 23명

강기갑(국회의원), 김두관(경남도지사), 김상희(국회의원), 김성순(국회의원), 김진애(국회의원), 노회찬(진보신당
공동대표), 박원순(서울시장), 손학규(국회의원), 신학용(국회의원), 유시민(국민참여당 공동대표),
유원일(국회의원), 이미경(국회의원), 이용섭(국회의원), 이재정(정당인), 이정희(국회의원), 정범구(국회의원),
정세균(국회의원), 주승용(국회의원), 천정배(국회의원), 최규성(국회의원), 최문순(강원도지사), 최철국(국회의원),
홍희덕(국회의원)

② 학계 : 14명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교수), 박재현(인제대 교수),
박창근(관동대 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윤순진(서울대 교수), 윤제용(서울대 교수),
이상돈(중앙대 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이정전(서울대 명예교수), 이준구(서울대 교수), 최영찬(서울대 교수)

③ 사회인사 : 13명

명진(승려),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박평수(고양환경운동연합), 서재철(녹색연합), 수경(승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한문(진주환경운동연합), 장동빈(수원환경운동연합), 지관(승려), 지율(승려),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최열(환경재단 대표)

2012년 3월 보수단체들이 작성한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이 진선미
의원실에 의해 발견됐다(그림 4, 5). 인명사전에는 환경운동연합 등 72개 단체와 박원순
시장 등 정치인 35명, 박창근 교수 등 전문가 38명, 염형철 사무총장 등 사회인사 65명을

주요 행위자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요 단체들의 임원 구조, 발언 및 활동, 주요 사안별 시국선언에 참여한 개인의 명단과 연명단체 등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 또한 국정원이 관련되어 있었다. 블랙리스트의 작성은 환경정보평가원이 주도하였는데, 이 환경정보평가원에 국정원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

이 블랙리스트는 시민사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국정원이 회신한 자료를 곧이곧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원 회신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4대강 불법 인사 및 단체에 대한 사찰을 시작한 것은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8년 12월 경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압수수색이 시작된 시기는 2008년 9월이다. 국정원은 2010년 6월을 끝으로 더이상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 시기 이후로도 4대강 사업은 진행되었고 이를 저지하는 환경단체의 활동 또한 이어졌다. 실제로 4대강 블랙리스트의 인명과 주요 활동에는 국정원이 공개한 2010년 6월 이후의 사건에 대한 기록 또한 담겨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제18조 정치 관여죄)과 형법(제123조 직권남용)에 위배하는 각 해당 규정상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정해져 있음을 감안하면 위 회신 기간이 의도적으로 축소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사찰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은 국정원이 본인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국가권력의 주시대상이 된 이상,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마음만 먹으면 내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삶이 피폐해졌다는 것이다.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토의 자연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반정부, 좌편향적 정치활동으로 매도하고 이에 대한 압박을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얼마나 수집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를 밝혀내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2018년 환경운동연합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비롯한 책임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제출한 고소장은 명확한 사유 없이 각하되어 돌아왔다.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당시 진행한 활동과 더불어 이를 보고한 대상자까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KBS가 당시 보고를 받은 직책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한 결과, 보고서의 명시되어있는 보고를 받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사찰은 분명히 진행되었는데 이를 책임질 사람은 없다. 사찰이 얼마나,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와 같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이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불법 사찰을 지시 및 감독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져 다시는 국가권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발제2

국가정보원 사찰·불법공작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주 변호사, 내외국내파일시민행동

국가정보원 사찰·불법공작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과거 사찰, 불법공작,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사찰·불법공작정보를 정보의 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사찰·불법공작 정보를 사용금지·폐기·이관함으로써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 아래 있는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찰”이라 함은 국정원(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정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이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국내 보안정보를 작성·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 “불법공작”이라 함은 국정원 또는 국정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이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는 행위 또는 수행한 제3호에서 정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국정원 또는 국정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이 수행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라 함은 국정원이 수행한 사찰, 불법공작,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대상자를 말한다.
5. ‘사찰·불법공작정보’ 국정원 또는 국정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이 수행한 사찰 또는 불법공작과 관련된 정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수집·작성·배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조사범위)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국정원이 1961. 6. 10.부터 2020. 12. 31.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수행한 사찰, 불법공작, 정치활동에 관여한 행위
2.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3.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한 사건

제2장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등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4조(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등위원회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진실조사
3. 진실규명대상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조사결과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5. 진실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진실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7.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및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사찰·불법공작정보 사용금지·이관·폐기,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권고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과거사 진실규명 또는 정보인권 등에 관하여 인권감수성이 풍부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5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된 또는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나머지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하되, 이 중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은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이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이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역사·정치·사회·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역사고증·사료편찬·지역조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정원에서 정보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조사활동을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보안업무규정 제9조 제1호에서 정한 I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I급 및 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소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소위원회 이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권위주의 통치시기 진실규명 소위원회
2.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진실규명 소위원회
3.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진실규명 소위원회

4. 정보공개·사용금지·이관·폐기 및 국가배상 소위원회

5. 지원 소위원회

- ②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지원소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소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및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3조(진실규명 신청)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신청의 방식) ① 제23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명칭)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6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신청이 제25조제1항 각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 기관등에는 국정원,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이 포함된다)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위원회의 요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교섭 경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⑥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⑩ 위원회는 제6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등은 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⑪ 비밀로 구분된 자료 또는 물건의 열람·복제·복사·반출·이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9조(진실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0조(진실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6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29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제30조에 따른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실규명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제2항, 제5항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로써 국가안전보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결정내용을 비공개하거나 공개 대상자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종합보고서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찰·불법공작·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진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찰·불법공작·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진상

나. 피해자 현황

다. 사찰 수단의 불법성 현황

라. 사찰·불법공작정보 생산·수집·배포 현황

2. 사건관련 피해자의 피해 상황

3. 사건의 발생원인

4.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통령, 국회,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과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대통령, 국회,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국회,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정보기관의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기관의 어두운 역사와 정보인권에 관한 규범을 전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정보기관 종사자에게 정보인권에 관한 규범을 광범위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 국회,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4조(피해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신청자등”이라고 한다)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신청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신청자등의 생명·신체·사생활·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5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에 있어 국정원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같은 조와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6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례

제38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등) ① 사찰, 불법공작,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범한 다음 각 호의 범죄 중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이 법 시행시부터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1. 「형법」 제123조, 제127조, 136조에 규정된 죄
2.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7조에 규정된 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제71조, 제72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규정된 죄
4.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에 규정된 죄

②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③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9조(소멸시효의 적용 배제) 피해자가 사찰, 불법공작,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166조 제1항, 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규정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국가배상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가 사찰, 불법공작,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제12조에 따른 배상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국가배상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신청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을 준용한다.

제41조(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① 사찰·불법공작정보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정원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정원은 국정원이이 보유·관리하는 사찰·불법공작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목록을 이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정보의 존재, 정보의 건수, 정보의 양을 상세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와 관련된 사찰·불법공작정보라고만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정원은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피해자의 이름(이명, 별명 등 청구인을 지칭하는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이 정보의 제목 또는 본문에 포함된 정보를 대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⑦ 국정원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국정원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⑨ 국정원은 제8항에 따른 요청이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정원의 과거 사찰, 불법공작,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정보를 정보의 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⑩ 제8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위원회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정원은 제9항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30일의 간격을 둔다.
- ⑪ 사찰·불법공작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은 위원회 또는 국정원에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다.
- ⑫ 국정원장은 사찰·불법공작정보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에 대통령, 국회,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정원은 위원회에 정보공개 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한다.

제42조(사찰·불법공작정보 사용금지등) ① 국정원은 사찰·불법공작정보를 이 법 이행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열람, 사용, 제공할 수 없다.

② 국정원장은 제1항에서 명한 금지의무 이행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정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현황을 위원회에 매달 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점검을 위하여 수시로 국정원에 자료제출 요구, 실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사찰·불법공작정보 관리에 관한 특례) ① 국정원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사찰·불법공작정보의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관 받은 사찰·불법공작정보를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2조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관한 후 즉시 사찰·불법공작정보를 폐기한다.

④ 국정원장이 제3항에 따라 사찰·불법공작정보를 폐기할 때에는 영구히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4조(사찰·불법공작정보 폐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받은 피해자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사찰·불법공작정보의 이관이 완료된 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 해당 사찰·불법공작정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찰·불법공작정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거나 역사 사료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찰·불법공작정보를 폐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 청구, 통지 방법 및 절차, 폐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찰·불법공작정보의 공개, 보관, 폐기, 사찰·불법공작정보 관련 공소시효, 사찰·불법공작정보 관련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벌칙) ①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제50조(형의 감경 등) ①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토론 1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토론 2

나세웅 MBC기자

토론 3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토론 4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사찰피해자

토론 5

장유식 변호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공보간사

토론회자료집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발행일 2021. 03. 03

발행처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내보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담당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